

『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국제 자매도시 창사(長沙)시와의 자매결연 20년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경제·문화·청소년 등 다방면의 교류를 한 단계 더 심화하고,
- 관내기업의 대 중국 서부지역 시장 선점 지원과 중국 요우커 유치 등 적극적인 교류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·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연 개요
 - 출연금액 : 금150,000,000원(시비)
 -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 -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- 조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주요사업

- 통상분야 지원
 - 현지 공관, 코트라무역관, 지·상사 네트워크 구축
 - (투자가 발굴) 현지 기업동향 정보 수집 및 시장조사를 통한 투자 유치 활동 전개
 - (박람회 참가 제반사항 지원) 관내기업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지원
 - 중국진출 관내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협의체구성
 - (전시관 운영) 구미 완제품 전시를 통한 현지 마케팅지원
- 교류분야 지원
 -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미시 관광자원 홍보
 - 한·중 양국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(문화, 스포츠, 관광 등)
 - 현지 각종 행사 참가를 통해 구미시 기업, 제품 등 홍보
- 구미시 중국 대표부 역할 수행
 - 중국과의 교류 협력 등 창구역할 수행
 - 구미시 기업인, 기관단체 등에 현지 방문활동 및 행정지원

○ 출연의 필요성

- 구미시는 중국진출 교두보 마련을 통한 관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중국수출 지원과 신규 투자자 발굴 등 적극적인 통상활동 전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
- 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는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직접 교류의 창구로써, 구미시의 중국 대표부 역할을 수행
- 또한 한·중 양국 간의 민간교류(문화, 스포츠, 관광 등)를 활성화 하고 중국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미시 관광자원 홍보를 추진하여 글로벌 문화 관광의 경쟁력을 갖춘도시를 구현 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○ 예산조치 :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」은

- 중국 창사시에 지역기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·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,
- 구미 수출의 30%를 차지하고, 27개의 관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시장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국 등 아시아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관내기업의 중국수출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